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

1. 관련 :

가.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(정정)(보험급여과-1671호, 2022.4.1.)

2. 위 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와 관련하여,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.

* 2022.4.4. 진료분부터 적용

붙임 :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추가 질의답변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한의사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2. 4. 14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968 (2022. 4. 1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